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8,980,178	19,469,405
일반회계	638,057,784	19,141,734
특별회계	10,922,394	327,672
기타특별회계	10,922,394	327,672
건축진흥특별회계	89,900	2,69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54,278	22,628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41,474	37,244
드림빌특별회계	502,140	15,06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55,566	7,667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92,400	2,77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1,500	4,5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23,106	141,693
장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1,030	1,531
장성군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61,000	91,8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7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